

평창 군관리계획(제2종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을 위한  
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9. 30, 평창군수
- 상정일자 : 2011. 10. 20(목) 제18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 
제2차 본회의

## 2. 제안이유

- 평창 Art valley 조성을 위한 관광·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펼치고자하는 다양한 순수미술인들이 모여 작가 정신을 공유하는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미술인과 미술인, 미술인과 관객을 이어주는 문화소통의 중심공간을 창조하여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.
- 이에따라, 평창지역의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 및 평창지역 문화예술과 연계한 여행 관광벨트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평창아트밸리 관광휴양시설을 조성코자 함.
- 따라서, 계획대상지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관리가 가능한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자 『관광·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(안)』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

### 3. 주요골자

1) 용도지역결정(변경),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

○ 용도지역결정(변경)

구 분	기 정	변 경	변경후	비 고
합 계	293,615	-	293,615	-
계획관리지역	154,666	증) 138,949	293,615	-
보전관리지역	122,946	감) 122,946	-	-
농 립 지 역	16,003	감) 16,003	-	-

○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면적

기 정	변 경	증.감	비 고
-	293,615㎡	증 293,615㎡	신 설

2) 군계획시설 결정

○ 교통시설 - 도로 신설 소로1류(L=459m, B=10~14m), 신설 소로2류(L=166m, B=8m)

○ 방재시설 - 신설 소하천(폭원 11~18m, L=1,700m)

### 4. 검토결과

○ 금회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건은 평창 아트밸리 조성을 위해 용평면 노동리 262-1번지 등 95필지 293,615㎡을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기존 계획관리지역 154,666m<sup>2</sup>, 보전관리지역 122,946m<sup>2</sup>, 농림지역 16,003m<sup>2</sup>를
-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관리가 가능한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자 계획관리지역 293,615m<sup>2</sup>로 결정(변경)하는 것임.

- 우리군의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휴양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다만, 식수원 오염 등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, 사업이 중간에 산림훼손만 하고 중단되어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.